

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					
특별 징수 의무 자	성명(상호명)				
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	
	대표자				
	사업자등록번호				
	주소(소재지)				
	전 화 번 호				
귀속 년 월 (지급 년 월)					
① 세 목	지 방 세	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·특별 자치도·시·군·구			
③ 납부액	일금	원정			
구 분		인 원	과세표준	지방소득세	
개 인	④ 이자소득				
	⑤ 배당소득				
	⑥ 사업소득				
	⑦ 근로소득				
	⑧ 연금소득				
	⑨ 기타소득				
	⑩ 퇴직소득				
	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				
	⑫ 비거주자 양도소득				
	⑬ 가감세액(조정액)				
	⑭ 가산세				
	⑮ 계				
	법 인	⑯ 법인원천 내국법인 외국법인			
		⑰ 가감세액(조정액)			
		⑱ 가산세			
⑲ 계					
합 계(⑮ + ⑲)					
위 금액을 납부 합니다		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.			
년 월 일		년 월 일			
○○○ 인		○○○ 수납기관		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

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					
특별 징수 의무 자	성명(상호명)				
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	
	대표자				
	사업자등록번호				
	주소(소재지)				
	전 화 번 호				
귀속 년 월 (지급 년 월)					
① 세 목	지 방 세	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·특별 자치도·시·군·구			
③ 납부액	일금	원정			
구 분		인 원	과세표준	지방소득세	
개 인	④ 이자소득				
	⑤ 배당소득				
	⑥ 사업소득				
	⑦ 근로소득				
	⑧ 연금소득				
	⑨ 기타소득				
	⑩ 퇴직소득				
	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				
	⑫ 비거주자 양도소득				
	⑬ 가감세액(조정액)				
	⑭ 가산세				
	⑮ 계				
	법 인	⑯ 법인원천 내국법인 외국법인			
		⑰ 가감세액(조정액)			
		⑱ 가산세			
⑲ 계					
합 계(⑮ + ⑲)					
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					
수납기관 귀하					

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					
특별 징수 의무 자	성명(상호명)				
	주민(법인)등록번호				
	대표자				
	사업자등록번호				
	주소(소재지)				
	전 화 번 호				
귀속 년 월 (지급 년 월)					
① 세 목	지 방 세	② 신고하는 특별자치시·특별 자치도·시·군·구			
③ 납부액	일금	원정			
구 분		인 원	과세표준	지방소득세	
개 인	④ 이자소득				
	⑤ 배당소득				
	⑥ 사업소득				
	⑦ 근로소득				
	⑧ 연금소득				
	⑨ 기타소득				
	⑩ 퇴직소득				
	⑪ 저축해지추징세액 등				
	⑫ 비거주자 양도소득				
	⑬ 가감세액(조정액)				
	⑭ 가산세				
	⑮ 계				
	법 인	⑯ 법인원천 내국법인 외국법인			
		⑰ 가감세액(조정액)			
		⑱ 가산세			
⑲ 계					
합 계(⑮ + ⑲)					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○○○ 수납기관				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

※ 납부장소 : ① (방문납부) 전국우체국, 농협, 관내금융기관 ② (인터넷납부) 위택스 www.wetax.go.kr

작성방법

1.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13, 제103조의29,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 2.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[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(예: 상반기는 ××년 1월)을 말합니다.]을 적습니다.
 3.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(또는 지급시기 의제일) [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(예: 상반기는 ××년 6월)을 말합니다.]
 4. ④~⑫, ⑮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.
 5. ④~⑫, ⑮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.
 6. ⑬, ⑰ 가감세액(조정액)은 연말정산,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.
 - 연말정산세액 등의 조정은 본 납부서에 적은 경우만 가능하며,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 7. ⑭, ⑱ 가산세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14에 따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액(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) 등을 적습니다. 이 경우 가감세액(조정액)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적습니다.
 - ※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6조(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)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.
 - 1)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
 - 2)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
-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×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×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(일 22/100,000)
8.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(www.wetax.go.kr)에서 확인하십시오.